

울산지방법원 2024. 11. 1 선고 2024가단4680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10. 18.

판 결 선 고 2024. 11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9,200,000원에서 2024. 6. 22.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183.87㎡ 전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,7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우정민

별지